##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27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김선민·신장식·조 국

김준형 • 이해민 • 김재원

박은정 · 차규근 · 강경숙

정춘생・황운하・서왕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 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법률 제 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	③
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	
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초연
	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
	<u>액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u>
	금액을 감하여 소득평가액으로
	<u>산정한다</u> .